규제영향분석서

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

<목 차>

1.사업장 위험성평가 기준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고용노동부		이름 이수준		
	담당부서 (과)	산재예방지원과	성 전	직급	6급	
	국장	최태호		연락처	044-202-8826	
	과장	금정수		이메일	020111065 @mail.go.kr	

2023. 03. 03. 작성

정책책임자직위 성명 (서명)

< 규제 개요 >

	1.규제사무명	사업장 위험성평가 기	준		
기본	2.규제조문	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6조제1호 및 제3호, 제13조, 제 15조제1항			
정보	3.위임법령	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			
	4.유형	강화	5.입법예고	2023.03.07~2023.03.27	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7.규제내용	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으 험성 결정 단계에서 근. 이 위험성평가 시 근로 는 가능한 모든 유해·우 감소대책을 수립·시행할 - 위험성평가의 모든 이 위험성평가의 모든 의 연행 지침에서는 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 이 현행 지침에서는 위 건로자에게 알리도록 규 나업장 내 존재하는 위 개선할 필요 이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를 라이 있어 그 기한을 명 라이 있어 그 기한을 명 의 위험성평가가 적절히 이 위험성평가의 사전경 참여하도록 규정	2나, 현행 지침어 로자의 참여를 명 자의 사망·부상 함요인을 발굴하는 수 있도록, 단계에 근로자의 라인 라는 유해·위험요 라이행토록 하는 함성하고 있어, 발굴 함성 전반을 근 함시 전반을 근 학수하는 작업 루어지도록 하여 작업 루어지도록 유도 루어지도록 유도 루어지도록 유도 루어지도록 유도 루어지도록 유도 루어지도록 요로 루어지도록 유도 우어지도록 유도	또는 질병을 야기할 수 있 나여 그 위험성을 결정하고 시참여를 보장할 필요 축의 핵심으로서, 사업주가 인에 대한 위험성을 스스 일련의 과정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및 개선을 실시하는 한편 로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시무를 부여하면서, 사업장 규정하지 않아 현장의 혼하도록 권고하고, 공사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사업장·공사현장에서 최초	
		○ 위험성평가를 하여이 이내에 최초 위험성평가		사업장 성립일 이후 1개월 나고,	

		- 1개월 이내의 작업·공사에 대한 입법불비를 막기 위한 위험성 평가 신속 시행을 규정					
		사업주					
	8.피규제집단		유 형		인원	원수 또는 규모	
	및 이해관계자	피규제지	피규제자 사업주 산출할 수 없음		t음		
	9. 규제 목표	○ 위험성평가의 절차 중 사전준비 단계와 위험성 결정 단계 등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, -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작업과 관련된 유해·위험요인의 위험성 및 그 위험의 감소대책을 이해하고 체화하며, - 최초 위험성평가의 착수 시기를 명확히 하여 사업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, 신속한 위험성평가 실시를 유도하는 한편, - 1개월 이내의 작업·공사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유해·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이행토록 함으로써, - 위험성을 감소하고 산재 예방의 목적을 달성					
규제의	10.영향평가 여부	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					
적정성	 11.비용편익						
	분석						
	(정성분석)						
		대분류	4 7711 701		분류		
		하는 일몰설정 2. ·	1.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하는 규제		미해당		
			관련된 규제				미해당
		3. 사회통남 성격의 규		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 ^조 제		범적 	미해당
		경제규제	경제규제 4.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		II	미해당	
기타 	기타 12.규제일몰제	여부기준 5.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			미해당		
		일몰설정		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		II	미해당
				¦적을 위한 규제0 한 규제	기나 주기	- 적인	미해당
		일몰설	정여부	일몰조문		연짇	} 여부
		미실	설정				
		일몰	유형	일몰설정기	간	일돌	<u>-</u> 문주기

13. 우선허용·		
사후 규제	해당없음	
적용여부		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근로자 참여) 사업주는 위험	제6조(근로자 참여)
성평가를 실시할 때, 다음 각 호	<u>\tilde{\text{u}},</u>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
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<u>해당 작</u>	<u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</u>
<u>업</u> 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	<u> 우 해당 작업</u> .
켜야 한다.	
<u> </u>	1. 유해·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
	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,
	유해·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
	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
	경하는 경우
1.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	<u>2</u> . <u>해당 사업장</u>
해 •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	
2.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	<u> </u>
수립하는 경우	
3.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	3.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
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	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
후	정하는 경우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3조(위험성평가의 공유) ① 사업주
	는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를 실시
	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
	사항을 게시, 주지 등의 방법으로
	알려야 한다.
	1.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
	된 유해・위험요인
	2. 제1호에 따른 유해・위험요인의
	위험성 결정 결과
	3. 제1호에 따른 유해・위험요인의
	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
	및 실행 여부
	4.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
	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
	여야 할 사항
	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알려야
	하는 사항을 법 제29조에 따른 근로
	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의 교육
	시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해당 작업
	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하여
	<u>야 한다.</u>
	③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 제
	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
	는 유해・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
	전 안전점검회의(TBM: Tool Box Meeti
	ng)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
	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	제15조(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) ①

혅 행

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 가.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 야 한다.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.

개 정 안

제15조(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) ①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(사업 개 시일을 말하며. 건설업의 경우 실착 공일을 말한다)로부터 1개월이 되 는 날까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 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 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. 다만, 1 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 시 후 지체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□ 추진배경

<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>

- (현행) 제6조(근로자 참여)에서 관리감독자가 작업의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,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,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
- (개정안) 유해·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(상·중·하 등)을 마련하고, 유해·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('하'이하 등)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, 유해·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을 강화

<위험성평가의 공유>

- (현행)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유해·위험요인별로 남 아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 게시,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 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
- (개정안) 위험성평가 결과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· 위험요인과 그 위험성, 위험성의 감소대책을 근로자들에게 알리고, 동 내용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포함하여 교육하여야 하며, 작업 전 안전점검회를 통해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주지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별도 규정 마련

<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>

- (현행) 제15조(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)에 위험성평가를 최초평가, 수시평가,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, 최초평가의 실시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음
- (개정안)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를 명확히 하면서도, 사업장에서 신속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성립일(사업 개시일·실착공일)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평가에착수하도록 규정하면서,
-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이나 공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

□ 정부개입 필요성

<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>

- 위험성평가는 사전준비, 유해·위험요인 파악, 유해·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,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까지의 과정 전체 를 의미하고,
-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과 그 위험요인은 항상 변동하므로 위험성 평가는 일회적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에 해당
-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위험성을 몇 단계로 나누어 관리할 것인지, 그 중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하게 되므로,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이고,
- 위험성 결정 과정에서는 실제 유해·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느 끼는 위험의 정도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,
- 현행 지침에서는 사전준비 및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규정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참여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고,

-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의 수준을 정하는 중요한 작업에서 근로자가 배제되는 한편,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의 의견이 유해·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음
- 따라서 위와 같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규정을 강화할 필요

<위험성평가의 공유>

-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, 근로자 공유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
-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유해·위험요인의 위험성에 대해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알릴 유인이 부족한 상황
- 위험성평가의 취지가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 및 그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위험을 찾아내고 위험성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,
- 위험성평가 실시 후 그 전반적인 결과와 그에 따르는 준수·주의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지시키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반드시 필요
-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, 위험성평가는 유해·위험 요인의 발굴, 위험성 평가, 결과에 따른 조치, 근로자의 위험·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 조치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
-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정하여, 위험성평가의 전반적인 내용을 근로자들이 아는 것이 산재예방이 라는 제도 목적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
- 현행 고시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·위험 요인의 위험성에 대해서만 근로자에게 게시,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,

-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·위험요인과 위험성 결정 결과,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,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하도록 규정하여
 -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법 취지를 살 리면서도,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제도와 그 결과를 잘 이해하고 체화하여 산재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<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>

- 위험성평가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·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그것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를 결정하고 대책을 세워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과정으로,
-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과 그 위험성은 수시로 변동하는 만큼 위험성평가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연속적인 개념에 해당
- 현행 고시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기평가와 구분 하여 최초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,
- 업종이나 작업기간 등 다양한 환경에 따라 최초평가 시기를 일률적 으로 정하기 어려워 착수시기를 정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으나,
- 최초평가를 사업장 성립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반드시 착수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신속한 위험성평가 착수와 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유도하고,
- 1개월 미만의 작업이나 공사에 대한 입법 불비를 막기 위해 동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험성평가에 착수하여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할 필요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<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>

○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가 이루어져야, 사업장 내의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세밀한 파악과 위험성 감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, 사전준비 및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도 근로 자의 참여를 규정할 필요

<위험성평가의 공유>

- 위험성평가 결과 근로자에게 작업과 관련된 유해·위험요인과 그 위험성,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, 감소대책 실행 계획과 결 과, 위험성 감소를 위한 준수·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하여,
- 결과적으로 사업장 내 위험회피를 통해 근로자의 사망·부상 또는 질병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할 필요

<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>

- 최초 위험성평가 착수에 대한 기한을 두지 않으면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신속하게 실시할 유인을 느끼지 못할 확률이 큼
- 위험성평가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정책 우선순위가 크고, 이미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사업주 의무사항에 해당
- 사업주들이 위험성평가를 지체없이 착수·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산 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조치결과	제시의견	일시 · 장소 · 방법	이해관계자명
	 ^년 검토	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	
	<u>년</u> 검토	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	

3. 규제목표

-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단계 및 위험성 결정 단계에 근로자의 참여 를 의무화함으로써,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의 수준 결정 및 실제 유해·위험요인의 위험성 판단에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 여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
 - 자신의 작업과 관련한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를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근로자들이 숙지·체화할 수 있도록 하며,
 - 최초평가를 사업장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도록 명확화 하고, 1개월 이내 작업이나 공사의 입법 불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체없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
 - 신속한 산재예방 활동 전개를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

Ⅱ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강화하고,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며, 1개 월 이내 종료되는 작업·공사에서 신속하게 위험성평가에 착수하 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은
 - 첫째,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에의 근로자 참여 의무의 취지를 고시에서 보다 구체화·명확화한 것이고,
 - 둘째,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가 숙지·체화하도록 함으로써 위험성평가의 목적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 이며,
 - 셋째, 1개월 이내 종료되는 작업·공사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해당 작업 등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산재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므로,
 - 위험성평가 실효성 제고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그 목적이 타당하고, 규제 영향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 않아 이해충돌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,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관리수준을 정한 것이므로, 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 정됨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	영향평가	
기술	경쟁	중기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
o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

해당없음

-	1	6	-
	1	O	

- 경쟁영향평가

해당없음

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	해당 여부
(A)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	해당없음
(B)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	해당없음
(C)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	해당없음
(D)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	해당없음

- **중기영향평가** 해당없음

-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

① 규제 영역	해당없음
② 규제 방식	해당없음
③ 예비분석모틱	<u>]</u> 해당없음
판단 근거	
④ 대상 업종	해당없음
⑤ 예비분석내용	- 해당없음
차등화적용 ⑥ 여부	해당없음

o 기타 고려사항
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

- 일몰설정 여부

지속적인 조치가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일몰 설정은 적절하지 않음

- 우선허용·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o 해외사례

- <EU> 「Guidance on risk assessment at work, 1996」
 - · EU 회원국가 내 경영진 및 노동자들의 위험성평가 시 지원하고자 마련된 가이드라인으로,
 - ·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은 작업장에 관련된 "모든 사람(the employers, management and workers and/or their representatives)"의 참여를 통해 수행해야 하고, 이들은 모두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(Part A 3.2.)
- · "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"에게 위험의 존재에 대해 공지하는 항목을 두고(Part B 6.) 있어 작업에 종사하는 해당 근로자보다 더욱 확대된 범위에 대해 공지하도록 하고 있음
- <ILO> Training Package on Workplac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for Small and Medium-Sized Enterprises, 2013_
 - · 중소기업을 위한 작업장 내 위험성평가와 관리에 관한 교육 패키지로, 위험성평가를 5단계 프로세스로 간단히 설명하면서, "전체인력의 적극적인 참여(with the active involvement of the entire workforce)"를 통해 프로세스를 수행하도록 설명(Part I 14p.)
- 해외에서는 위험성평가 착수 시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, 위험성평가 실시가 상시 의무화되어 있어 사실상 사업장 성립 즉 시 실시해야 함
-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시기의 불명확에 대한 피규제자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, 불명확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위험성평가 착수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위험성평

가의 '착수'에 대한 기한을 마련하고자 함

관련 국제기준	일치여부	불일치 사유(불일치 시에 한함)
EU, ILO	일치	

o 타법사례

해당없음

Ⅲ. 규제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- 피규제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조(적용 범위) 및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,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이므로,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,
- 한편, 1개월 이내의 작업·공사의 경우 공정이나 작업이 복잡·다기 하지 않으므로, 지체없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토록 한 규정의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o 행정적 집행가능성

- 행정적 집행 대상은 아니나,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「중대재해 감축 로드맵」과 관련하여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활동을 추진하여 준수를 독려할 계획

o 재정적 집행가능성

- 규제 집행을 위한 재정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는 없음

Ⅳ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- ○「중대재해 감축 로드맵」에서 '위험성평가 全단계에 노·사 참여 및 협업을 강화'하도록 발표('22.11.30)
- 그간 최초 위험성평가를 규정하면서 착수·시행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,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
- 위험성평가는 노·사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으로,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 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극대화
- 해외(EU 등)에서도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며, 평 가 결과에 대해 근로자들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

2. 향후 평가계획

○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및 업종별·규모별 이해관계자와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방관서의 위험 성평가 특화점검 등으로 피규제자의 규제 수용도 등을 지속 검토

3. 종합결론

-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근로자가 참 여하고, 자신의 작업과 관련된 위험성평가 결과와 위험성 감소대 책, 준수·주의사항 등을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숙지하고 체화 하도록 공유하도록 하며,
 - 최초 위험성평가를 사업장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하도록 명확히 하고, 1개월 이내 작업·공사의 입법불비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단서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재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이미 위험성평가를 의무로 이행하는 사업주에게 있어 필요 최소 한의 관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준수 가능성이 높고

- 「중대재해 감축 로드맵」과 연계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자율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

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분석기준년도	규제시행년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
2023	2023	10	4.5	백만원, 현재가치

규제대안1 : 사업장 위험성평가 기준				
영향집단	=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	직접			
· 소상공인	간접			
피규제 일반	국민			
피규제자 이외	기업			
· 소상공연	<u>기</u>			
피규제자 이외	일반			
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		
기업순비용	<u>용</u>		연간균등순비용	

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	

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<규제대안1 : 사업장 위험성평가 기준>

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:

□ 직접비용

(정성)영향집단명	사업주
활동제목	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, 위험성평가의 공유,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
비용항목	노동, 교육훈련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
근거설명	 ○ 현재도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, - 유해ㆍ위험요인 파악, 위험성 추정,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이행 과정 등 일부 절차에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함 - 추가적으로 사전준비 단계와 위험성 결정 단계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, 발생하더라도 매우 경미할 것으로 판단됨 <위험성평가의 공유> ○ 현재도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, 위험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므로, -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유하는 규정을 강화하더라도 그 방법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들고 있으므로 별도의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, 발생하더라도 경미할 것으로 판단됨 ○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는 명칭이나 형식에 특별한 정함이없이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는 안전보건 관련 회의로서, 현재도 현장에서 작업 전 작업공유 등의 형태로 자율적으로 널리실시되고 있음 - 이러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한해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도록하는 규정은 별도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경미한 비용만을 발생시킬 것으로 판단됨

<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> ○ 현재도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므로, - 최초 위험성평가를 사업장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○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작업이나 공사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므로, - 위험성평가를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

□ 간접편익

(정성)영향집단명	사업주
활동제목	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, 위험성평가의 공유,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
편익항목	산재예방에 따른 편익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
근거설명	<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> ○ 근로자 참여 강화를 통한 위험성평가의 효과성 제고 정도에 대한 편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는 곤란 - 다만,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하는 직·간접 보상비용, 처벌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, 작업중지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손실 등이 절약 <위험성평가의 공유> ○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함으로써 위험성평가의 효과성이 제고되는 정도에 대한 객관적 편익 산출은 곤란 - 다만, 근로자들의 위험성평가 내용 숙지에 따라, 산업재해 예방효과가 높아지므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하는 직·간접 보상비용, 처벌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, 작업중지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손실등이 절약 <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> ○ 위험성평가의 빠른 착수·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편익의

객관적 산출은 곤란
- 다만, 신속한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하는 직·간접 보상비용, 처벌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, 작업중지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손실등이 절약

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:

□ 편익

(정성)영향집단명	근로자
활동제목	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, 위험성평가의 공유,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
편익항목	산재예방에 따른 편익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
근거설명	<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> ○ 근로자의 참여 강화에 따른 직접적인 편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는 곤란 - 다만,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내용 숙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효과 제고로 근로손실, 치료비용 보전 등의 간접적 편익이 발생 <위험성평가의 공유> ○ 근로자들의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에 따른 직접적 편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는 곤란 - 다만, 위험성평가 내용 숙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로 근로손실 방지, 치료비용 보전 등의 간접적 편익이 발생 <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> ○ 위험성평가의 빠른 착수·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근로자 편익의 객관적 산출은 곤란 - 다만, 신속한 위험성평가 및 유해·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따른 근로손실, 치료비용 보전 등의 간접적 편익이 발생